

공 사 시 방 서

○ 공 사 명 : 수장고 출구 계단설치 및 전시실 천장보수공사

○ 공사기간 : 착수일로부터 6 일간

○ 공사내용

1) 천장재 일부 철거 (1층 로비 우측 벽면)

가) 길이 9.8M , 길이 2.9M, 너비 0.8M 천장재 철거

- 경량 천장 골조 제외
- 합판 및 천장텍스 철거

2) 신규 가벽 벽면 시공

가) 소화전 철거 후 경량철골조, 석고 2PY 매움 시공

나) 신규 소화전 이전 장소(로비현관 기둥 측) 경량철골조, 석고2PY 시공

3) 천장재 철거 재시공

가) 천장재 철거 부위 일부 재시공 (10.16m²)

- 합판 재시공 (베니어 합판 9T)
- 텍스 재시공 (집텍스 난연 10T)

4) 신규 가벽 벽면 재도장 (33m²)

- 무광 백색 내부 수성 페인트 부분 퍼티 작업 후 재도장시공

5) 계단 골조 시공 (용접시공)

가) 높이 4M, 계단 총 기장 4M 계단골조 시공

- 100*50 사각파이프 골조 시공

6) 계단판 절곡 시공

가) 체크 철판 2T 레이저 절곡 및 컷팅

나) 계단 골조 용접 접합시공

7) 난간 시공

가) 2T 평철 난간 용접 접합 시공

8) 부식방지 도장시공

가) 계단판 및 기둥, 난간 등 부식방지 우레탄 흑색 도장 시공

○ 적용범위

- 본 시방서는 『기획운영과 내부 개선공사』에 적용한다.
- 본 시방서에 적용되는 시방서는 문화재청 제정 표준 시방서를 따른다.
-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.

○ 적용규정

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.

- 설계도서에 기재된 사항
- 공사계약 일반조건, 공사입찰유의서,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, 기타 계약관계 예규

○ 공사의 착공

- 계약 상대방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착공계와 공사예정공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계약 상대방은 착공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공사공정예정표 1부.
 - 착공전 현장사진 1부.
 -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

○ 현장대리인

-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 및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받고 현장을 이탈할 수 있다.
- 현장대리인은 공사전 공사현장으로의 작업자 출입을 관리하여야 하며, 공사중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고, 공사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.

○ 공사용 재료

- 품질
 -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도면 및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이어야 하고,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한다.
- 부적합한 재료
 - 본 시방서의 규정에 위배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 하여서는 안 되며, 특히 석면 및 환경부 고시 사용제한 제품은 사용 하여서는 안 된다.
- 공사용 자재는 신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.
 - “산업표준화법”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(이하 “KS 표시품”이라 한다)

- “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“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
- 규격 및 성능 기준이 없는 품목으로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것
- 공사용 자재는 감독원의 반입검사를 득한 후 반입해야 하며,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.
-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가공 자재에 관해서는 설계도서 확인 후 현장을 확인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수치로 맞추어 제작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계약 상대방자는 필요시 기기제작 및 시공 상 필요한 도면 또는 견본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감독원은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재시공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○ 안전대책

- 계약 상대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각종 안전수칙 및 절차, 규정을 따라야 하며, 본 공사에 필요로 하는 제반 안전설비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작업전 설치하여야 한다.
- 인적,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비상시 응급 처리절차에 의거 처리 하여야 한다.
- 계약 상대방자는 공사 시공 전에 현장(안전)책임자를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, 공사 수행 중 인원, 공사목적물 및 기타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계약 상대방자는 공사 시행중 통행인 및 승객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며,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 규격 및 디자인의 공사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모든 중량물의 시공은 감독원이 입회한 후 현장대리인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 설치하여야 한다.
- 계약 상대방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,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 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불완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하여야 한다.
-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 시공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은 관련법규를 준수 하여 예방 방지 조치를 한 후에 피해 발생이 없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.
- 계약 상대방자는 본 공사 시행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기존 시설물 및 이 전물의 기물의 파괴, 손상, 기타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, 이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계약 상대방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작업장에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 후 작업을 실시한다.
- 현장 내에서는 금연을 하여야 한다.
- 작업자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작업장에 출입을 금한다.

○ 계약 상대방자의 의무

- 계약 상대방자는 공사계약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, 공사 시행에 있어 시 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도면 및 시방서의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- 도면 및 시방서등의 설계도서에 의한 정당한 시공 중에 명백한 하자 발생이 예견되는 부

분은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,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.

○ 불합격 공사의 철거

- 계약요구조건과 일치하지 못한 공사는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. 불량한 시공 상태, 결함 있는 자재 및 불합격자재의 사용, 부주의로 인한 손상, 시공자의 무단시공 등 기타 이유로 손상이나 공사인수 이전에 하자사항이 발견되는 부적합한 공사는 즉시 철거하여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대체 재시공되어야 하며, 이를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.
- 본 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인정받지 못한 공사나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, 감독원은 부적합한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제거, 대체 및 개선하도록 시킬 권한을 갖는다.
-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내용 및 감독원의 공종별 승인,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불성실 이행이나 계약상대자의 임의 판단에 의한 시공사항은 정당한 공사로 인정되지 않으며,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
○ 준공

- 계약 상대방자는 설계도서에서 의거 공사완료 후 공사 전, 후의 사진이 첨부된 준공계 2부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계약 상대방자는 발주처의 요구 시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자재시험· 검사관계 서류, 자재수불 반입관계 서류, 기타 인, 허가서류 등
- 계약상대자는 공사 준공 시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자료(사용설명서, 카탈로그 등)를 준공도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현장정리 및 청소
공사 완료시 계약상대자는 가설 시설물, 잉여자재, 발생잔재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현장 내, 외부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설물 사용 승인 전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.
- 공기연장
 -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.
 - 단,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- ① 태풍·홍수, 그 밖에 악천후, 전쟁 또는 사변, 지진, 화재, 전염병, 폭동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
 - ②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
 -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

2027 년 07월 29일

업 체 명 : 주식회사 더가연

대 표 자 : 조문주 , 김경철 (인)

연 락 처 : 010 - 3019 - 9822

국립고궁박물관 귀하